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69 호 2026. 7. 9.(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4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49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5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14)].....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51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46)].....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52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06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39)].....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1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14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15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40)].....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16호[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추가조사, 2차) 공시송달 공고 요청] 16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제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 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실시계획 신고번호 (년월일)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공사내용
	성 명	주 소				
제2025-1호 (2025.2.5.)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26-1번지 일원 공유수면	6,320	2026.7.2.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4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번호	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제2026 -1호	정재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21번길 29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64번지 일원	8.25 (100mm관로)	'26. 07. 06. ~ '31. 05. 31.	활어도소매업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관로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6-14

나. 허가 연월일: 2026. 7. 9.

2. 점용·사용의 목적: 인공구조물설치(도시가스 배관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45-13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일시 10.80㎡, 계속 1.20㎡

나. 기 간:

- 일시: 2026. 7. 9. ~ 2026. 8. 7.

- 계속: 2026. 5. 7. ~ 2031.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박성수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번지

6.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51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박경*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4길 15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
점 용 기 간	○ 2026. 7. 4.(토), 18.(토) 15:00 ~ 19: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5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호수지구 3B 3L	호수중앙로 68	2026. 7. 8.	2026. 7. 9.	2013. 12. 30.	호수지구 중앙을 지나는 도로를 의미하는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1199-4	송정24길 3	2026. 7. 8.	2026. 7. 9.	2018. 5. 10.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 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906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		
점용 위치	○ 매곡동 969	노선명	○ 중2-549
점용 목적	○ 상수도 인입공사	점용 면적	○ L = 8.0m ○ A(일시) = 8.0㎡ ○ A(계속) = 0.4㎡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9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제40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것
3.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4. 공시송달 당사자 및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썬PC	이○○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28, 지상2층 (진장동)	등록취소

5. 공고(게시)기간 : 2026. 7. 7. ~ 2026. 7. 21.(15일간)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7. 22.(수) 13:30 울산광역시 북구청 6층 문화체육과
7. 청문 주재자 :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장,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장
8. 유의사항
 -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

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치고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052-241-7335)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 등록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9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제40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것
3.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4. 공시송달 당사자 및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제우스PC	강○○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76, 지상1층 (호계동)	등록취소

5. 공고(게시)기간 : 2026. 7. 7. ~ 2026. 7. 21.(15일간)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7. 22.(수) 16:00 울산광역시 북구청 6층 문화체육과
7. 청문 주재자 :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장,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장
8. 유의사항
 -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

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치고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052-241-7335)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 등록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915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박성수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효문동 753	노선명	○ 중1-44
점용 목적	○ 도시가스 인입공사	점용 면적	○ L = 3.0m ○ A(일시) = 5.4㎡ ○ A(계속) = 0.6㎡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9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조사, 2차)
2. 공고기간: 2026. 7. 7. ~ 2026. 7. 21.(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5.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394번지 일원	미상	미상	경작	45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7. 공시송달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7. 28.(화)까지** 자진 철거해주시길 바라며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불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

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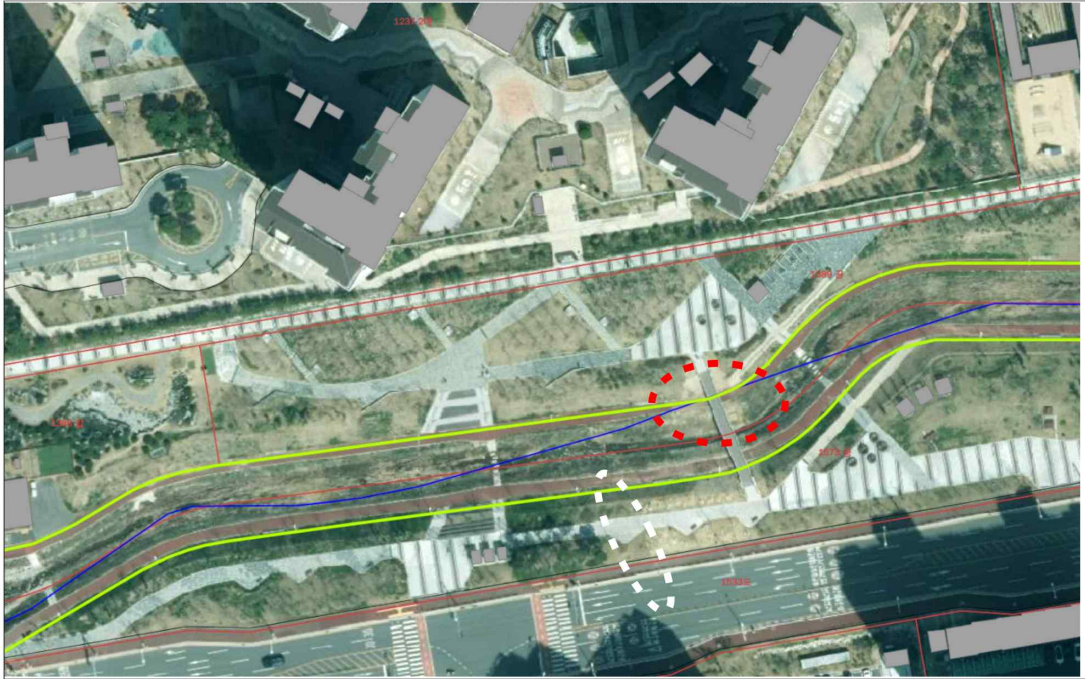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